

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0418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0418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합57817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박소은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최지영, 홍이표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주형, 오용규

변론 종결2021. 7. 14.

판결 선고2021. 8. 18.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합57817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 1) 2016. 12. 31.자 362,55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 2) 2017. 1. 31.자 347,34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 3) 2017. 2. 28.자 339,63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187,564,945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897,454,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는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2016. 6. 18.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E의 건설기계를 우즈베키스탄 공사 현장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운송'이라 한다), 주식회사 J 등에게 위 화물의 해상운송을, 원고에게 위 화물의 육상운송을 각 의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C와 E의 건설기계를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6.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이란의 반다르아바스 지역에서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지역으로 건설기계 운송을 완료하였다.

2) E은 2016. 7. 21.부터 2017. 1. 10.까지 C에 이 사건 운송과 관련한 운송료 및 통관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3. C에게 운송비 897,454,945원을 청구하였으나, C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9년 6월경 위 운송비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7. 9.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C와 피고의 용선계약 체결 등

1) C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 L[L, 이후 'M'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정기용선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을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선박은 K이 2010. 9. 14.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라 N로부터 리스받아 사용해오던 것이었다[K은 N과 2010. 10. 12. 리스기간, 리스료 등을 변경하는 계약을, 2012. 2. 10. 이 사건 선박의 명칭을 변경하는 추가약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K과 N 사이의 위 리스계약과 변경계약, 추가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2) K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만기를 앞두고 재정 악화로 이 사건 선박 유류비, 선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선박은 2013. 10. 11.경 싱가포르 법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 또한 K은 자금난으로 N에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잔존원금을 지급할 능력도 되지 않았는데, 이는 N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였다. N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경우 K은 N에 약정손해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이 사건 선박을 어떠한 부담이 잔존하지 않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였다.

3) 이러한 상황에서 K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C의 대표이사이던 I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이 사건 선박의 압류해제 자금을 지원해 줄 회사를 물색하였다. I은 피고의 대주주이자 E의 대표이사이던 F에게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면, C와의 정기용선계약 체결 및 용선료 지급을 통해 리스료 등 비용을 보전해주고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또한 I은 그 무렵 F에게 E의 건설기계 운송을 모두 C에 맡겨달라고 요청하면서, 'C의 주주로 참여하여 C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낸 수익을 함께 배당받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4) 피고는 2013. 10. 11. K 및 N과, K으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는 C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선기간을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정기 용선료를 매월 미화 216,000달러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용선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4. 5. 1. C와 이 사건 선박의 용선기간을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 용선료를 매월 미화 126,000달러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용선계약'이라 한다).

5) 한편 F은 I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4년경 I로부터 C 주식 중 37.5%에 해당하는 지분을 인수하였다. C는 2013년경부터 E로부터 해외 건설기계 운송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하였다.

라. C의 피고에 대한 용선료 지급

1) C는 원고로부터 운송비 지급을 청구받은 이후인 2016. 12. 1. 피고와 이 사건 선박의 용선기간을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연장하고 정기 용선료를 매월 미화 300,000달러로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용선계약'이라 하고, 앞서의 이 사건 1, 2차 용선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

2)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3차 용선계약에 따라, 2016. 12. 31. 362,550,000원, 2017. 1. 31. 347,340,000원, 2017. 2. 28. 339,630,000원을 각 용선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위 각 돈은 이 사건 3차 용선계약에서 정한 정기 용선료에 각 지급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이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하고, 각 금원지급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차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2, 18, 35, 36, 48, 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운송비 897,454,945원을 지급받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성립(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등 참조). 이 때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는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C의 무자력 갑 제4 내지 6,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2021. 7. 9.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15년경부터 이미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실,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C가 2016년경부터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사실, 2016년 10월 말경을 기준으로 C의 채무 합계액이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과 외상매출금 채권 등 적극자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상태인 사실, 2018년경 C에 대한 직권 폐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C의 채무초과상태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인하여 심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에 관한 통모 및 사해의사 존부 을 제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D이 피고에게 고액의 용선료를 지급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D을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4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과 관련하여 육상운송 업무를 완료하고 2016. 11. 3. C에 운송비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C는 그 무렵 E로부터 이 사건 운송과 관련한 거액의 운송료 및 통관수수료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운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C는 원고로부터 운송비 지급을 청구받은 직후인 2016. 12. 1. 피고와 용선료를 월 미화 126,000달러에서 월 미화 300,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3차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운송과 관련 없는 피고에게, 이 사건 3차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 합계 1,049,520,000원(= 이 사건 1차 금전지급행위 362,550,000원 + 이 사건 2차 금전지급행위 347,340,000원 + 이 사건 3차 금전지급행위 339,63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위 계약 체결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달리 C가 피고에 대한 용선료를 인상하거나 이 사건 운송과 관련 없는 피고에게 용선료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②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C의 사내이사는 D이었는데, D은 2008. 12. 15.부터 2018. 9. 28.까지 E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9. 1. 9.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2. 21.부터 2019. 1. 23.까지 피고의 지배인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E의 대표이사는 F이었는데, F은 피고 발행주식 50%를 소유한 대주주일 뿐 아니라 2011. 12. 1.부터 2013. 8. 5.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고, 2013. 8. 5.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G는 F의 딸이다. 그리고 E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사내이사인 H는 2019. 1. 23.까지 피고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와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한 것은 I과 F 사이에 이 사건 승계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고에게 C와 정기용선계약 및 그에 따른 용선료를 보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I과 F은, F이 E을 통하여 건설기계 운송 물량을 C에 몰아주면 C의 주주 지위에서 C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낸 수익을 함께 배당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피고, C, E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세 회사는 사실상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정당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 피고와 C는 피고와 N을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승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1차 용선계약의 용선료가 과다한 것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2차 용선계약과 같이 용선료를 감액하였다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종료되면 다시 용선료를 인상하여 감액분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주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3차 용선계약을 통해 용선료를 인상한 것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실질적인 용선료 증액이라거나 과다한 용선료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 C는 피고와의 이 사건 용선계약 관계 유지를 통하여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한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금 사정이 어려운 피고가 N과의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른 리스이용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리스로 등 이 사건 선박 관련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한 것이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3,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은 피고와 N을 상대로 이 사건 승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5. 10. 7. 이 사건 승계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O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O이 상고하였으나 2018. 7.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C는 위 취소소송 계속 중인 2016. 12. 1. 피고와 이 사건 3차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곧이어 피고에게 이 사건 3차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4월경 이 사건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위와 같은 매각 과정에 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I도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C도 이 사건 선박 매각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선박의 운영으로 인하여 적자만 누적된 상태였으며, C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3차 용선계약을 통한 용선료 인상이 피고와 C의 감액분 보전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거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C의 사업 계속을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㉓ O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용선계약상 용선료의 다과는 이 사건 승계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무관하였다. 또한 이 사건 3차 용선계약 체결일은 O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종료 시기와 전혀 상이하여 어떠한 관련성을 찾기도 어렵다(이 사건 3차 용선계약은 항소심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1년 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2년 전 체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용선계약을 통한 용선료 감액 경위 및 이 사건 3차 용선계약을 통한 용선료 증액 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㉔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용선료 감액에 따른 손해를 장기간 부담하면서까지 C와 용선료를 대폭 감액하는 이 사건 2차 용선계약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와 C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밀접한 관계였음을 추단케 할 뿐이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용선계약의 용선료 감액 및 증액 경위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정한 용선료가 이 사건 선박 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C와 피고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변경될 수 있는 것임을 뒷받침할 뿐이다. 특히, C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운송비 지급 청구를 받은 직후 O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종료되기도 전에 용선료를 인상하였는데, 이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로 하여금 C에 대한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게 할 목적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전 합의의 이행 시기를 편의에 따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㉕ 앞서 본 이 사건 선박의 매각 경위와 시기에 비추어 볼 때, C로서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선박의 매각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C에게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한 사업을 지속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1)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C가 피고에 대해 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1, 2차 금전지급행위 및 이 사건 3차 금전지급행위 중 187,564,945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중 이 사건 1차 또는 2차 용선계약에서 정한 용선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당한 계약상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위 각 용선료를 넘어서는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다룬다. 그러나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변제된 액수가 상당한 액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변제행위 전체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7791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이 사건 1차 또는 2차 용선계약에서 정한 용선료를 초과하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만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상회복 범위 및 방법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에 수익자가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부터 법정이자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등 참조), 그 금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897,454,945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3차 금전지급일인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승규

판사김동완

판사배용준

1) 피고는 당시에 이르러 을 제57호증을 제출하면서 피고가 C에 실제 지급한 돈의 액수가 이 사건 3차 용선계약에서 정한 용선료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피고에게 그때그때 발생하는 수입금 등을 입금하고 피고는 이러한 지급금을 포함하여 매월 말 이 사건 용선계약상의 용선료를 정산해 온 사실, C의 거래처원장에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이 사건 3차 용선계약에서 정한 용선료가 모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도 원심에서 C로부터 이 사건 3차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를 모두 지급받았다고 자인하였던 점(피고는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에 이르러서야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를 다투기 시작하였다), C와 피고의 특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가 양자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의 전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이 사건 3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선료를 모두 지급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을 제5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